



박태호 원장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

[약력보기 ▶](#)

최석영 고문
T. 02-6386-6620
E. seokyung.choi@leeko.com

[약력보기 ▶](#)

배연재 연구위원
T. 02-772-5909
E. yeonjae.bae@leeko.com

[약력보기 ▶](#)

박정준 연구원
T. 02-772-4806
E. zjj@leeko.com

[약력보기 ▶](#)

강혜인 연구원
T. 02-6386-6556
E. zhi@leeko.com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무역협정 - 주요 내용 및 분석 -

개요

-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 양국 간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전쟁 이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2020년 1월 15일 워싱턴에서 서명
- 이번 협정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연계된 통화 및 환율,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최종 규정 등 총 8개의 챕터로 구성
- 이번 합의문 서명으로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 기존 1,2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했던 15% 관세는 7.5%로 하향 조정
 - 그 외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부과해오던 25% 관세는 유지
- 동 협정은 서명 30일 후 발효되고 종료 통보 60일 후 종료

합의 요지

I.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영업비밀, 의약품 지식재산권, 특히, 지리적 표시, 상표, 불법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집행,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은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변화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 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자에 게재된 글의 모든 저작권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2. 특히 영업비밀 관련 중국이 국내법과 기존 관행 개선을 요구
 -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
 - 부정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적 침해와 비공개의무의 위반 등을 포함하며, 영업비밀 보유자가 구제명령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특히와 관련해 중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연계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합리한 지연을 감안하여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특허 출원에 대한 보충자료 제공을 허용하기로 합의
4. 지리적 표시, 상표권, 불법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집행의 개선 약속, 미국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불법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할 것을 명시
5. 중국은 본 협정 발효 후 30일 이내 '자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공표하고 제안한 이행 조치에 대해 적어도 45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제공

II.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1.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행을 다루기 위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의무를 규정
 - 중국이 그동안 시장접근에 대한 행정 승인 또는 정부 혜택을 조건으로 외국기업에게 강제적기술이전을 요구했던 관행을 종식하기로 합의
2. 중국은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고 시장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과 인허가를 허용할 것을 약속
3. 별도로 중국은 외국 기술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투자 감독 및 왜곡된 지원 자제를 명시
 - 궁극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 이니셔티브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관심 반영

III. 식품 및 농산물 시장접근(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1. 농산품의 중국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였던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제 취급

- 중국은 향후 2년간 최소 800억 달러(연간 최소 400억 달러)의 미국 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을 구입 및 수입
- 중국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과학 및 위험에 기반하는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의 평가 및 승인 규제절차를 이행
- 2. 중국은 WTO의 국내지원 조치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존중하고 관세쿼터와 관련한 WTO 의무 역시 준수하는 것에 합의하여 밀, 옥수수 및 쌀에 대한 관세 쿼터(tariff rate quota, TRQ)의 관리를 개선
- 3. (1) 농업 협력 (2) 낙농제품 및 유아용 조제식 (3) 가금류 (4) 쇠고기 (5) 가축 사육 (6) 돼지고기 (7) 가공육 (8) 전자시스템 (9) 수산물 (10) 쌀 (11) 식물 복원 (12) 침가제 (13) 애완동물 식품 및 동물 사료 (14) 관세율 쿼터 (15) 국내 보조금 (16) 농업 생명공학 (17) 식품안전 등 17개 분야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시장접근 증진

IV.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1. 은행, 보험, 증권 및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확대 및 전자결제서비스 관련 시장접근 개선 및 라이선스 절차운영을 보장

V.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과 투명성(Macroeconomic Policies and Exchange Rate Matters and Transparency)

1. 국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절하나 특정 환율 표적화(targeting of exchange rates)는 지양
2. 양국은 IMF 규범에 따라 시장환율을 따르고 거시적 환율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환시장과 정책에 대한 정기 논의를 추진
3. 기존 IMF를 통해 이뤄지던 환율 평가 등 주요 내용 공개 관행은 재확인 및 유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1) 매월 외화보유고 및 선물환포지션을 IMF 양식에 맞춰 공개하고 (2) 분기별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대출과 외상매출금 등 세부 재무 회계에 대한 국제수지도 공개하며 끝으로 (3) 분기별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 정보 역시 공개
4. 본 챕터 관련 분쟁 발생 시 분쟁절차(합의문 제7장)에 회부될 수 있고, 실패 시 IMF를 통한 조정 추진

VI. 교역 확장(Expanding Trade)

1.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최소 2,000억 달러 규모(2017년 기준치)의 미국산 상품(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및 서비스를 수입
 - 공산품: 산업장비, 전기기기 및 장비, 의약품, 항공기, 자동차, 광학 및 의료기기, 철강 등
 - 농산물: 대두, 육류, 곡물, 면직물, 해산물 등
 - 에너지: 액화천연가스, 원유, 정제품, 석탄
 -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 및 여행서비스 등
2. 또한, 협정문에 2020년과 2021년 최소 구매액을 명문화해서 2020년 767억 달러 수입, 2021년 1,233억 달러 규모 수입 약속(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단위: 1억 달러)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합계
2020년	329	125	185	128	767
2021년	448	195	339	251	1,233
합계	777	320	524	379	2,000

VII. 상호 평가 및 분쟁 해결(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1. 1단계 합의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실질적 이행을 위한 챕터
2. 미국 USTR 및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협의 및 실무급 협의의 구조로 운영되며 합의된 내용의 이행과 분쟁 해소에 관한 논의
3. 한쪽 당사국이 본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분쟁해결사무소에 이의제기(appeal)를 신청 가능. 본 협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본 협정의 발효 이전에 취해진 조치로서 발효일 이후에도 유지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의 대상 가능
4. 분쟁이 제기될 경우, 우선 양국 실무레벨에서 분쟁해소를 추진하되 불가 시 USTR 및 부총리 급 협의로 격상 추진

평가 및 전망

1. 미-중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세계경제에 확산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대비 및 탄핵 공세에 직면, 협상 성공을 선전하고 시진핑 주석도 국내경제침체 우려를 해소
2. 양국 합의사항을 보면 (1) 영업비밀 특히, 위조방지, 지리적 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 (2) 강제 기술이전 방지를 위한 합의; (3)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은행 설립, 신용평가 서비스, 보험 등 분야의 중국시장개방 약속; (4) 중국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조품, 농산물, 에너지 및 서비스 구매 약속; (5) 비교적 효율적인 분쟁해결 등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
3. 이번 합의로 1,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7.5%로 50% 감축되었으나 전체 3,600억 달러 상당의 대중 수입품 및 1,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고 있는 구조로서 여전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지속
 - 이번 합의 결과로 지식재산권, 강제기술이전, 금융서비스 등 분야의 중국 규제가 완화됨으로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제3국도 부수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베트남, 대만 및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노무라 연구소)
4. 1단계 합의에 포함된 거시경제 및 환율 문제, 농업보조금 관련 규정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협정의 이행을 담보할 강력한 이행 체제가 미흡하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중국의 보조금, 국영기업 및 사이버보안 등 보다 복잡한 구조적 이슈에 대한 2단계 협상의 추진 일정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 갈등구조는 장기화 예상

5. 이런 여건에 비추어 미-중 합의 이행의 면밀한 관찰, 중국의 내부 시스템의 개선 동향 모니터링, 장기적으로 양국 갈등의 지속으로 공급사슬의 분절화, 안보와 통상의 연계 등 통상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경영전략의 재검토 필요

-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